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28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1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의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 관할통제권자가 행정상 강제를 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관한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의무자에게 직접강제 이전에 여러 절차(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이행 기간 부여, 계고, 통지 등)가 있는 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의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무 이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행정상 강제에 대해 「행정기본법」상의 개별 조문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는 점도 참고 필요

- 「농어촌정비법」 제133조(참고자료 참조)

- 다만,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퇴거의 강제 등) (생략) <u><신설></u>	제7조(퇴거의 강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단서 신설></u>	제7조(퇴거의 강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u>다만,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

법률 제 호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해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퇴거의 강제 등) (생 략) <u><신 설></u>	제7조(퇴거의 강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 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국 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